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4년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전월대 비 1.0% 감소
- 2014년 5월 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 융 및 보험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공공행정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석유정제(6.6%), 1차금속(0.8%), 가 구(9.4%)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12.7%), 영상음향통신(-11.3%), 의료정밀과학(-20.5%) 등에 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2.3%(전월대비 2.9% 감소)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2.7%), 전문·과 학·기술(-2.8%), 운수(-0.9%), 협회·수리·개인 (-1.7%), 예술·스포츠·여가(-1.8%) 등에서 감소하 였으나 보건·사회복지(6.2%), 금융·보험(1.8%), 부동산·임대(5.3%), 도소매(0.1%) 등에서 늘어 전 년동월대비 0.6%(전월대비 0.6% 증가) 증가함.
- 2014년 5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4%)에서 감 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2.3%), 음식료품 등 비 내구재(1.9%)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전월대 비 1.4% 증가) 증가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년 동월대비 4.8%(전월대비 1.4% 감소) 증가함. 기계 류 내수출하는 무선통신용중계기, 금형, 반도체조 립장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줄어 전월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1.8%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 발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주택, 기타건축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 2014년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에서 하락하여 전월대비 0.4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코스 피지수 등은 상승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4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7% 상승(생활물가지수 1.4% 상승)

○ 2014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10년=10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하여 지난달과 동일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5월	1/4	5월 ^p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9	0.3	-0.5	0.7	-2.1(-2.7)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2.0	0.3	-0.4	0.6	-2.3(-2.9)
생산	출하	10.0	5.4	4.7	2.8	5.6	3.1	1.7	0.6	0.5	1.5	-0.8	0.5	0.2	1.8	0.4	-0.2	0.3	-1.6(-1.9)
9.7	내수	7.3	4.0	3.8	1.5	4.1	0.8	-0.5	-0.9	-1.2	-0.5	-3.2	-1.9	-1.0	1.6	-1.4	-2.7	1.4	-0.1(-2.4)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2.9	-1.2	-3.3(-1.3)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8	2.1	1.4	1.7	1.9	0.6(0.6)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02	0.7	1.2	0.8	0.6	2.5	1.0(1.4)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1.4	-1.3	-4.0	5.9	4.8(-1.4)
물가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7	1.1	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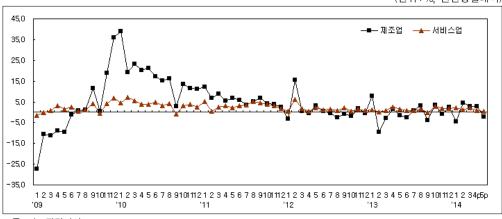
-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6월 기준임.
 -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의류·신발(4.6%), 주택·수도·전 기·연료(3.0%), 교육(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 식료품·비주류음료 (0.5%), 음식·숙박(1.2%) 부문 등은 상승하였고, 통신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주 류·담배(-0.2%), 교통(-0.1%) 부문은 하락함.
- 2014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107.8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 비 1.4%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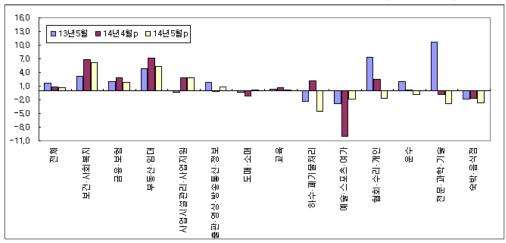


주: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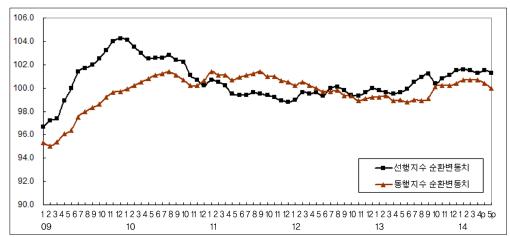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6), 『2014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전년동분기대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폭 하락

- 2014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6,76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29천 명(2.4%)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63천 명으로 290천 명(1.9%)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04 천 명으로 339천 명(3.1%) 증가하였음.
- 2014년 2/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동분기대비 0.9%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5%)은 전년동분기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52.1%)은 전년동분기대비 1.1%p 상승하였음(그림 4 윗그림 참조).
- 2014년 2/4분기 중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50.2%로 전년동분기대비 0.7%p 상승하였음(그림 4 아랫그림 참조).
- 2014년 2/4분기 중 취업자는 25,79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64천 명(1.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0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8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88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6천 명(2.2%)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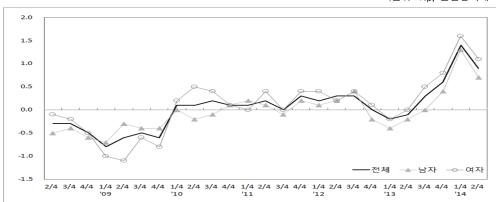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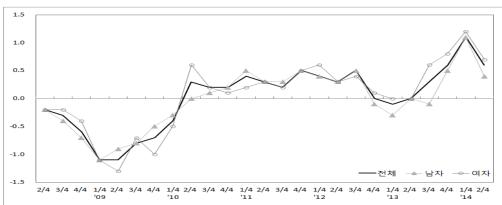
					2013			2014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 제	활 동 연	인 구	25,091 (0.9)	26,138 (1.1)	26,291 (1.4)	26,187 (1.7)	26,078 (2.2)	25,945 (3.4)	26,767 (2.4)	26,762 (2.2)	26,825 (2.0)		
참	가	율	59.9	62.2	62.5	62.1	61.7	61.3	63.1	63.0	63.1		
취	업	자	24,184 (1.1)	25,326 (1.3)	25,478 (1.4)	25,410 (1.7)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11 (1.6)	25,875 (1.6)		
고	용	률	57.7	60.2	60.5	60.3	60.0	58.8	60.8	60.8	60.9		
실	업	자	907	812	813	777	733	1,031	977	951	949		
실	업	률	3.6	3.1	3.1	3.0	2.8	4.0	3.7	3.6	3.5		
비경제활동인구		16,831 (2.0)	15,911 (1.5)	15,807 (1.2)	15,982 (0.5)	16,167 (-0.6)	16,397 (-2.6)	15,685 (-1.4)	15,691 (-1.0)	15,666 (-0.9)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통계청(2014.7), 『2014년 6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단위:%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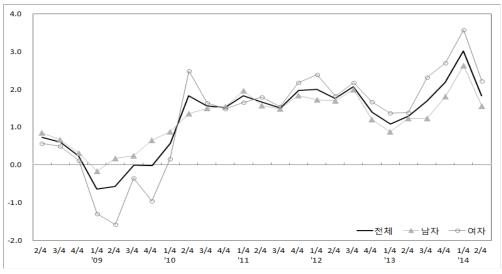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p,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4년 2/4분기 중 실업자는 97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5천 명(20.3%) 증가, 실업률은 3.7%로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5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2천 명(12.6%) 증가하였고, 여성 실 업자는 42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3천 명(32.4%)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3.7%로 전년 동분기대비 0.8%p 상승하였음.
- 2014년 2/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68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6천 명(-1.4%)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0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5천 명(-1.6)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8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0천 명(-1.3%) 감소하 였음.
 - 2014년 2/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9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2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31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0천 명(-5.8%)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98천 명으로 68천 명(-1.6%) 감소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전년동분기대비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2/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36천 명, 3.3%), 건설업(12천 명, 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3천 명, 3.8%),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4천 명, 1.9%)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4천 명, -3.2%)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15천 명, -0.5%)에서 감소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 업	24,184 (1.1)	25,326 (1.3)	25,478 (1.4)	25,410 (1.7)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11 (1.6)	25,875 (1.9)
농림어업	1,167	1,686	1,751	1,724	1,504	1,179	1,631	1,656	1,675
	(-0.7)	(-1.6)	(-1.0)	(1.1)	(-1.0)	(1.0)	(-3.2)	(-3.4)	(-2.3)
제조업	4,156	4,182	4,180	4,152	4,245	4,279	4,319	4,324	4,345
	(3.0)	(3.0)	(2.3)	(0.6)	(1.2)	(3.0)	(3.3)	(3.6)	(4.1)
건설업	1,656	1,801	1,818	1,775	1,783	1,683	1,813	1,821	1,842
	(-3.7)	(-0.4)	(0.2)	(0.2)	(-0.5)	(1.6)	(0.6)	(0.8)	(1.9)
도소매 및 음식·	5,534	5,585	5,641	5,652	5,751	5,837	5,798	5,772	5,803
숙박업	(-0.7)	(-0.2)	(0.8)	(0.7)	(2.6)	(5.5)	(3.8)	(3.1)	(3.7)
사업·개인·공공	8,656	8,974	8,972	8,990	8,994	8,865	9,147	9,160	9,133
서비스업 및 기타	(3.1)	(1.7)	(1.5)	(2.5)	(3.6)	(2.4)	(1.9)	(1.6)	(1.3)
전기·운수·통신	2,999	3,082 (3.1)	3,099	3,102	3,054	3,055	3,067	3,062	3,063
및 금융업	(-0.4)		(3.4)	(3.8)	(1.9)	(1.9)	(-0.5)	(-0.4)	(-0.3)

주:1)()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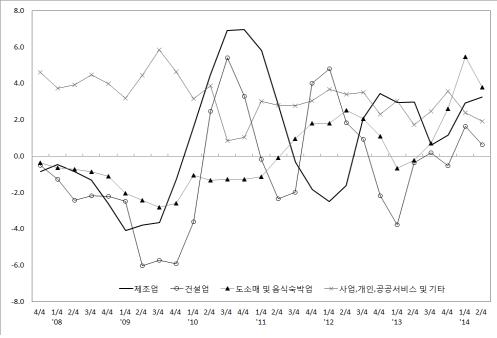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7), 『2014년 6월 고용동향』.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³⁾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4년 2/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6,98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천 명(-0.3%) 감소, 임금근로자는 18,80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85천 명(2.6%)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175천 명으로 478천 명(4.1%)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도 5,063천 명으로 118천 명(2.4%)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567천 명으로 111천 명(-6.6%)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짐(그림 7 윗그림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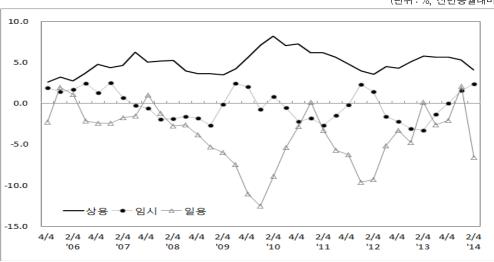
			2013				20	14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4,184 (1.1)	25,326 (1.3)	25,478 (1.4)	25,410 (1.7)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11 (1.6)	25,875 (1.6)
비임금근로자	6,578	7,006	7,049	7,049	6,854	6,597	6,984	6,986	7,017
	(-1.1)	(-2.1)	(-1.8)	(-1.5)	(-0.9)	(0.3)	(-0.3)	(-0.3)	(-0.5)
자영업주	5,520	5,726	5,733	5,740	5,618	5,512	5,712	5,698	5,726
	(-0.5)	(-1.8)	(-1.8)	(-1.4)	(-0.9)	(-0.1)	(-0.2)	(-0.5)	(-0.1)
무급가족종사자	1,059	1,280	1,316	1,309	1,236	1,085	1,272	1,288	1,291
	(-3.9)	(-3.4)	(-2.4)	(-1.6)	(-0.8)	(2.5)	(-0.6)	(0.6)	(-1.9)
임금근로자	17,606 (1.9)	18,320 (2.6)	18,429 (2.8)	18,361 (2.9)	18,492 (3.4)	18,316 (4.0)	18,806 (2.6)	18,825 (2.4)	18,859 (2.3)
상용근로자	11,379	11,697	11,750	11,848	11,925	11,985	12,175	12,167	12,212
	(5.1)	(5.8)	(5.3)	(5.6)	(5.6)	(5.3)	(4.1)	(3.8)	(3.9)
임시근로자	4,762	4,945	4,980	4,928	4,935	4,835	5,063	5,084	5,058
	(-3.1)	(-3.3)	(-2.2)	(-1.3)	(0.0)	(1.5)	(2.4)	(2.4)	(1.6)
일용근로자	1,465	1,678	1,699	1,585	1,631	1,496	1,567	1,574	1,589
	(-4.8)	(0.2)	(1.0)	(-2.6)	(-2.1)	(2.1)	(-6.6)	(-7.4)	(-6.5)
36시간 미만	5,563 (67.9)	4,821 (46.8)	3,343 (4.6)	5,083 (7.6)	3,395 (5.5)	3,593 (-35.4)	3,397 (-29.5)	3,383 (-56.6)	3,387 (1.3)
36시간 이상	18,099 (-9.9)	20,217 (-5.6)	21,833 (1.0)	19,810 (0.2)	21,636 (1.7)	20,829 (15.1)	22,090 (9.3)	22,131 (27.6)	22,19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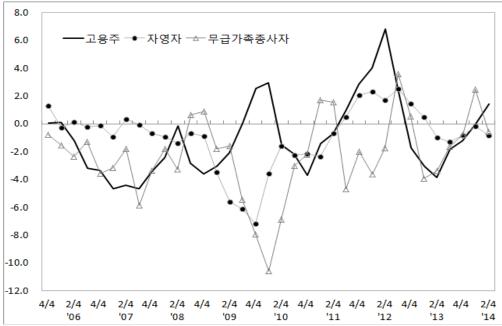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4.7), 『2014년 6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주: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4년 2/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9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24천 명(-29.5%) 감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90천 명으로 1,873천 명(9.3%) 증가함.

◆ 전 연령대 · 교육수준별 실업률 전년동분기대비 상승

- 2014년 2/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9.4%, 1.5%p), 30대(3.4%, 0.4%p), 40 대(2.4%, 0.3%p), 50대(2.3%, 0.5%p), 60세 이상(1.9%, 0.3%p) 전 연령대에서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에서도 전년동분기대비 중졸 이하(2.3%, 0.3%p), 고졸(4.1%, 0.8%p), 대졸 이상(3.8%, 0.4%p) 전 교육수준에서 상승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907 (3.6)	812 (3.1)	813 (3.1)	777 (3.0)	733 (2.8)	1,031 (4.0)	977 (3.7)	951 (3.6)	949 (3.5)	
15~29세	343 (8.4)	325 (7.9)	327 (7.9)	328 (7.9)	328 (7.9)	419 (9.8)	399 (9.4)	366 (8.7)	407 (9.5)	
30~39세	195 (3.3)	180 (3.0)	176 (3.0)	170 (2.9)	155 (2.6)	187 (3.2)	202 (3.4)	194 (3.3)	197 (3.3)	
40~49세	143 (2.1)	146 (2.1)	146 (2.1)	131 (1.9)	114 (1.7)	155 (2.3)	167 (2.4)	177 (2.6)	146 (2.1)	
50~59세	127 (2.3)	106 (1.8)	99 (1.7)	106 (1.8)	88 (1.5)	130 (2.2)	140 (2.3)	147 (2.4)	137 (2.3)	
60세 이상	99 (3.4)	56 (1.6)	66 (1.8)	42 (1.2)	48 (1.4)	140 (4.4)	69 (1.9)	68 (1.8)	63 (1.7)	
중졸 이하	148 (3.3)	101 (2.0)	103 (2.1)	86 (1.8)	84 (1.8)	173 (3.9)	108 (2.3)	107 (2.2)	105 (2.2)	
고졸	367 (3.7)	341 (3.3)	354 (3.5)	345 (3.4)	335 (3.3)	443 (4.3)	427 (4.1)	412 (3.9)	430 (4.1)	
대졸 이상	392 (3.7)	370 (3.4)	356 (3,2)	346 (3.1)	313 (2.8)	416 (3.7)	442 (3.8)	433 (3.8)	414 (3.6)	
취업무경험 실업자	61	48	49	54	49	83	61	51	67	
취업유경험 실업자	845	764	765	723	684	948	916	900	883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통계청(2014.7), 『2014년 6월 고용동향』.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4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2014년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3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984천 원) 1.7% 증가함.
 - 2014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특별급여(-7.6%)에서 감소하였으나 정액급여 (3.2%), 초과급여(10.6%)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3,231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는 2014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3% 초반에 머물러 2013년 4월 4.9%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1.367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4월 실질임금은 0.2% 증가함.
 - -소비자물가(2010년 기준)가 반영되는 실질임금은 2014년 4월 기준 0.2% 증가함(그림 8 참조).
 - 2014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이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4년 1~4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01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118천 원)대비 2.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3년 1~4월 평균 대비 2.8% 상승한 3,390천 원을 기록함.

〈표 6〉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	14
		2011	2012	2013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전체 근	로자	2,844	2,995	3,111	3,118	2,984	3,201	3,036
임금총액	1	(1.0)	(5.3)	(3.9)	(4.1)	(5.1)	(2.6)	(1.7)
	임금총액	3,019	3,178	3,299	3,299	3,162	3,390	3,231
		(-0.9)	(5.3)	(3.8)	(4.1)	(4.8)	(2.8)	(2.2)
	정액급여	2,341	2,470	2,578	2,558	2,557	2,641	2,639
상용	0114	(4.8)	(5.5)	(4.4)	(4.8)	(4.9)	(3.2)	(3.2)
근로자	초과급여	179	181	184	177	180	191	199
	포기디어	(-8.4)	(1.0)	(1.7)	(0.1)	(-1.6)	(7.8)	(10.6)
	특별급여	498	527	537	563	425	558	392
	그르다~	(-19.3)	(5.8)	(1.8)	(2.3)	(6.7)	(-0.9)	(-7.6)
임시・	일용근로자	1,215	1,293	1,377	1,377	1,375	1,403	1,367
임금총액	1	(15.1)	(6.4)	(6.5)	(7.0)	(11.0)	(1.9)	(-0.6)
스비지드	2フレス) 스	104	106	108	107.5	107.5	108.8	109.1
소비자물가	12 A T	(4.0)	(2.2)	(1.2)	(1.5)	(1.3)	(1.2)	(1.5)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5	3.7	1.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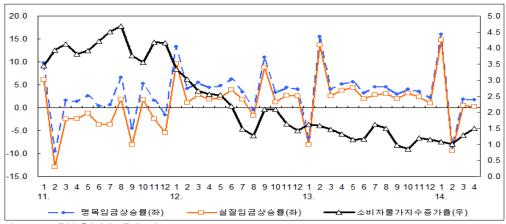
주: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3년 1~4월 평균 대비 3.2%, 초과급여는 7.8%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0.9% 감소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3년 1~4월 평균 대비 1.9% 상승한 1,40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4년 1~4월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1.4% 상승함.
 - 2014년 1~4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로 2013년 1~4월 평균 수준인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 2014년 1~4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모두 전년동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명목임금상승률 둔화폭이 더 커 실질임금증가율은 전년동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1.4%를 기록함.

◆ 2014년 4월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몇 개 산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임금은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4년 4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6%), 제조업(3.5%), 금융 및 보험업(3.2%), 도매 및 소매업(2.2%) 등에서 임금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반면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9%), 교육서비스업(-1.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 숙박 및 음식점업(-0.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4%) 등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감소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천 원,%)

								20)14	
	2012	2012 2013		월			1~	4월		
			평급	균	4월	4	평	균	4	월
전 산 업	2,995 (5.3)	3,111 (3.9)	3,118	(4.1)	2,984	(5.1)	3,201	(2.6)	3,036	(1.7)
광업	3,470 (4.9)	3,557 (2.5)	3,477	(5.1)	3,533	(0.9)	3,389	(-2.5)	3,095	(0.1)
제조업	3,221 (6.1)	3,371 (4.7)	3,404	(5.4)	3,689	(3.6)	3,580	(5.2)	3,272	(3.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5,108	(3.5)	5,006	(3.8)	5,323	(4.2)	4,537	(-1.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677	(4.6)	2,749	(4.2)	2,760	(3.1)	2,663	(1.3)
건설업	2,273 (4.2)	2,414 (6.2)	2,449	(6.9)	2,551	(8.7)	2,497	(2.0)	2,404	(1.6)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156	(2.5)	3,312	(6.1)	3,183	(8.0)	3,140	(2.2)
운수업	2,589 (8.2)	2,732 (5.5)	2,687	(5.9)	2,974	(4.1)	2,704	(0.6)	2,764	(1.9)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744	(3.3)	1,775	(6.2)	1,764	(1.2)	1,731	(-0.6)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4,028	(2.4)	4,418	(5.3)	3,894	(-3.3)	3,785	(-0.4)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240	(1.8)	5,871	(2.2)	5,306	(1.3)	4,933	(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236	(1.6)	2,263	(5.1)	2,311	(3.3)	2,290	(-0.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102	(2.1)	4,406	(5.1)	4,350	(6.0)	4,263	(4.6)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850	(5.2)	1,864	(7.7)	1,904	(2.9)	1,874	(0.9)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380	(5.8)	3,654	(6.8)	3,435	(1.6)	3,082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654	(1.5)	2,728	(2.6)	2,622	(-1.2)	2,581	(-0.4)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326	(8.0)	2,354	(6.7)	2,389	(2.7)	2,275	(0.0)
협회 • 단체 및 기타캐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46	(0.5)	2,403	(1.9)	2,206	(-1.8)	2,170	(-1.9)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4월 평균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0%), 제조업(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2%)의 임금증가가 두드러짐.
 -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0%)이고, 제조업(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2%), 부동산업 및 임대업(3.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1%), 사업서비스업(2.9%), 여가관련서비스업 (2.7%) 등에서 임금이 상승함.
 - 반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3.3%), 광업(-2.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하락함.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2014년 4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했으나 중소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감소

- 2014년 4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둔화함.
 - 2014년 4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2.9%)와 초과급여 (6.7%) 증가의 영향으로 2.3% 증가한 2,904천 원을 기록한 반면 특별급여는 5.8% 감소함.
 - ─ 반면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7% 감소한 1,380천 원을 기록함.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4,40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상 승함. 이는 정액급여(4.2%)와 초과급여(19.6%) 증가의 영향임.
 - 또한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2% 증가한 1,248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	14
		2012	2013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상용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299 (4.1)	3,162 (4.8)	3,390 (2.8)	3,231 (2.2)
1 70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558 (4.8)	2,557 (4.9)	2,641 (3.2)	2,639 (3.2)
전 규모 (5인 이상)	초과급여	181 (1.0)	184 (1.7)	177 (0.1)	180 (-1.6)	191 (7.8)	199 (10.6)
(OL -10)	특별급여	527 (5.8)	537 (1.8)	563 (2.3)	425 (6.7)	558 (-0.9)	392 (-7.6)
	비상용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77 (7.0)	1,375 (11.0)	1,403 (1.9)	1,367 (-0.6)
	상용임금총액	2,834 (5.9)	2,938 (3.7)	2,906 (3.9)	2,838 (4.5)	2,969 (2.2)	2,904 (2.3)
	정액급여	2,333 (5.9)	2,433 (4.3)	2,410 (4.6)	2,413 (4.5)	2,485 (3.1)	2,484 (2.9)
5~299인	초과급여	156 (3.5)	160 (3.0)	153 (2.0)	160 (1.6)	163 (6.3)	170 (6.7)
	특별급여	345 (7.7)	345 (-0.3)	343 (-0.3)	265 (6.0)	322 (-6.0)	249 (-5.8)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 (7.0)	1,392 (7.4)	1,389 (11.1)	1,408 (1.1)	1,380 (-0.7)
	상용임금총액	4,424 (3.5)	4,583 (3.6)	4,699 (4.5)	4,321 (4.8)	4,917 (4.6)	4,406 (2.0)
00001	정액급여	2,965 (4.3)	3,093 (4.3)	3,086 (5.2)	3,071 (5.8)	3,210 (4.0)	3,199 (4.2)
300인 이상	초과급여	275 (-3.9)	270 (-1.6)	263 (-3.6)	252 (-9.0)	293 (11.5)	302 (19.6)
이상	특별급여	1,185 (3.4)	1,220 (3.0)	1,351 (4.7)	997 (6.0)	1,415 (4.8)	906 (-9.2)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12 (2.7)	1,220 (8.8)	1,350 (11.4)	1,24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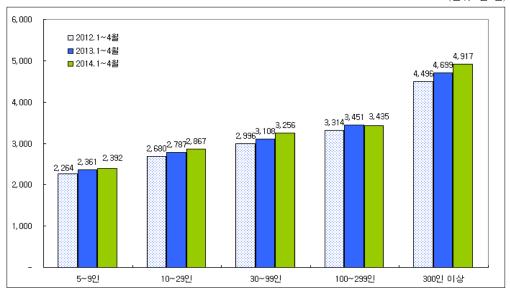
주: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1~4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천 원)



주:1~4월 평균값은 누적 평균값임.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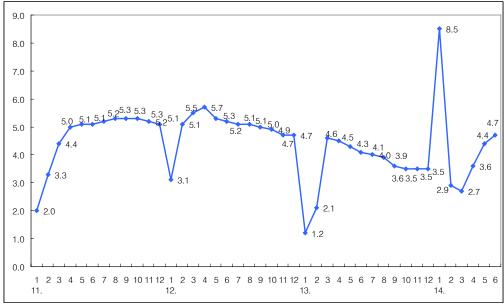
- 2014년 1~4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하였고, 300인 이상 규모의 상승률이 두드러짐.
 -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정액급여(3.1%)와 초과급여 (6.3%)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2% 증가한 2,969천 원을 기록함.
 - 임금총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특별급여 지급률이 전년동평균 대비 6.0% 하락한 영향으로 상승률 증가폭은 둔화함.
 - 한편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1% 상승한 1,408천 원을 기록함.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정액급여(4.0%), 초과급여 (11.5%), 특별급여(4.8%)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4.6% 증가함.
 - 또한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1.4% 상승한 1,350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 4.7%

○ 2014년 6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4.7%로 2013년 6월 인상률(4.1%)에 비해 0.6%p 상승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4월 근로시간 0.9% 감소

- 2014년 4월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0.9%) 감소함.
 - 2014년 4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80.2시간)은 전년동월(181.8시간)에 비해 1.6시간 증가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7.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고, 특히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4.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함.
- 2014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5% 감소함.
 - 2014년 1~4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3.5시간)에 비해 0.8시간(-0.5%) 감소함.
 - 2014년 1~4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1% 감소한 178.3시간이었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8.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8%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4		
	2012	2013	1~4월 평균		1~4월 평균		
			1 74월 정신	4월	1 74월 정신	4월	
전체근로시간	174.3 (-1.1)	172.6 (-1.0)	173.5 (-0.3)	181.8 (5.5)	172.7 (-0.5)	180.2 (-0.9)	
상용총근로시간	179.9 (-1.2)	178.1 (-1.0)	178.4 (-0.6)	188.2 (5.4)	178.3 (-0.1)	187.9 (-0.2)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 (-0.8)	165.6 (-1.0)	166.4 (-0.1)	175.9 (6.3)	165.7 (-0.4)	175 (-0.5)	
상용초과근로시간	12.8 (-5.9)	12.5 (-2.3)	12 (-6.3)	12.3 (-6.1)	12.6 (5.0)	12.9 (4.9)	
비상용근로시간	122.3 (-0.2)	122.5 (0.2)	126 (3.4)	122.9 (5.3)	118.7 (-5.8)	114 (-7.2)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4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4년 4월 건설업(-3.7%), 숙박 및 음식점업(-3.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업(-3.6%)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두드러짐.
 - 2014년 4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2.7%), 금융 및 보험업(1.3%), 제조업(1.1%), 여가관련서비스업(0.8%), 사업서비스업(0.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2%)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외 산업에서 근로시간은 감소함.
 - 2014년 4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6.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2.4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4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의 증감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2014년 1~4월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은 전년동평균대비 4.0% 감소한 건설업이었고,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6%), 운수업(-2.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평균 근로시간 증가폭이 가장 큰 산업은 전년동평균대비 2.8% 증가한 교육 서비스업이었고, 여가관련서비스업(1.3%), 제조업(1.2%), 금융 및 보험업(1.2%) 등 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산업별 1~4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20	14
	2012	2013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전 산 업	174.3(-1.1)	172.6(-1.0)	173.5 (-0.3)	181.8(5.5)	172.7 (-0.5)	180.2(-0.9)
광업	185.3(-0.9)	180.6(-2.5)	181.1 (-2.2)	187.5(1.7)	179.5 (-0.9)	189.8(1.2)
제조업	186.4(-2.2)	185.0(-0.8)	185.2 (-0.8)	194.8(4.1)	187.4(1.2)	197(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4.3 (-0.5)	181.6(4.1)	172.1 (-1.3)	180.4 (-0.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 (-0.8)	182.0(-1.5)	182.2(-1.1)	192.4(4.7)	179.4 (-1.5)	186.9 (-2.9)
건설업	152.5 (-0.9)	152.7(0.1)	156.5 (3.2)	158.3(7.5)	150.2 (-4.0)	152.4 (-3.7)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4.5 (0.6)	183.2(6.3)	173.1 (-0.8)	181.7(-0.8)
운수업	181.7(0.1)	177.8(-2.1)	177.5 (-1.9)	185.1 (3.5)	173.5 (-2.3)	179.7 (-2.9)
숙박 및 음식점업	186.6(0.2)	177.3(-5.0)	175.2 (-6.2)	182.5 (-3.6)	174.9 (-0.2)	175.9 (-3.6)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 (-0.5)	163.8(0.9)	174.4(7.9)	164.8(0.6)	174.7(0.2)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4.3 (1.3)	173.2(9.6)	166.2(1.2)	175.4(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 (-0.4)	191.5(-1.0)	192.5 (-0.9)	200.1 (4.9)	190.5 (-1.0)	196.6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 (-0.8)	164.8 (0.3)	176.3(9.0)	165.5(0.4)	175.7 (-0.3)
사업서비스업	173.1 (0.6)	172.3(-0.5)	172.3 (-0.1)	181.1 (6.2)	172.8(0.3)	182(0.5)
교육서비스업	151.1 (-1.2)	150.6(-0.3)	151 (0.5)	156.4(7.6)	155.2(2.8)	160.6(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3 (-0.3)	182 (5.4)	169.6 (-2.0)	177.4(-2.5)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0.6)	158.0(-0.1)	156.8(0.6)	165.3(4.8)	158.8(1.3)	166.7(0.8)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8.5 (-0.1)	176.4(4.2)	164.1 (-2.6)	170.1 (-3.6)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 2014년 1~4월 평균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

- 2014년 4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30~99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 서 감소함.
 - 세부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보면, 상용근로자 30~99인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187.1시간인 반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7시간(-2.4%),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7시간(-1.5%),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6.0시간(-0.2%)으로 감소함으로써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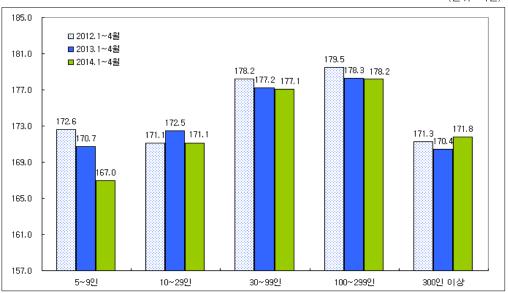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 노동동향

-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 한편 2014년 1~4월 평균으로 보면, 5~299인 사업체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300일 이상 규모에서는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4년 1~4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7.0시간(-2.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1시간(-0.8%),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1시간(-0.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2시간(-0.1%)으로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증가했는데, 이는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그림 11 참조).

[그림 11] 규모별 1~4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시간)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6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432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281건)보다 151건 높은 수치임.
- 지난 6월 조정성립률 54.2%
 - 지난 6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70.1%에 비해 15.9%p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
 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3, 2014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탑	븹	행정	취하		조정
	건수	건수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지도	철회	진행중	성립률
2014. 6	432	393	176	75	101	149	16	133	29	39	39	54.2
2013. 6	281	235	143	92	51	61	27	34	7	24	46	70.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1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73건)보다 59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27.1%(54건), 기각·각하· 취하비율이 72.9%(145건)를 차지함.

(표 12) 2013, 2014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처리내역										
	건수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진행중			
2014.6	214	199	52	2	55	25	65	0	15			
2013.6	273	245	88	4	27	29	97	0	2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자동차 업계, 임금·단체협약 갈등 고조

- 한국 GM 노조는 7월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조합원의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으나, 17일 18차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안을 노조에 제시하며 갈등을 일부 완화함.
 - 한국 GM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에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 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 함해 달라고 요구함.
 - 한국 GM 노사는 지난 4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18차 임·단협에서 사측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안을 노조에 제시함.
 - 이에 한국 GM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생산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함.
- 반면에, 현대·기아차지부를 포함한 계열사 노조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정기 상여금과 고정·일률적인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다고 밝힘.
 -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계열사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기아차 사측 역시 환율하락을 포함한 경영환경 악화를 이 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 16일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를 포함한 계열사 노조들은 현대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10만 계열사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자"고 주장함.
 - 한 노조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회사 측은 협상 자리에서 통상임금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87년 노조를 처음 만들 때 마음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함.
 -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현대차의 통상임금 협상 결과를 전 산업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노조로서도 섣불리 물러서기 어려워 또다시 파업 사태 가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함.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도 승급유보와 강제 전환배치를 비롯한 현안과 후속차량 계획 부족 문제, 그리고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17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함.
 - 지난 8~11일 노사는 집중교섭을 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르노삼성노조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는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한 시간씩 파업에 나서기도 함.

- 노조는 최근 회사가 유보한 승급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에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를 거부하여 강제로 전환배치된 30여 명에 대한 원직복귀, 아웃소싱 철회 및 임금 총액 8% 인상을 요구함.
- 한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강제 전환배치 취소와 같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다른 단협 조항에 대한 협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회사 측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 르노삼성은 8월부터 르노-닛산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닛산의 차량인 로그 후 속차량을 위탁생산해 북미에 수출할 예정이어서 "닛산 로그 등 신차의 생산일정 이 빠듯해 8월부터는 생산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올해 하계휴가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 교섭을 마무리하자"고 요구함.
- 하지만 노조는 "현재의 노사 현안은 회사 측이 단체협상 내용과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 측이 단협을 준수해 노사 신뢰를 회복한 후 노조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말함.

◈ 전국교직원노조, '일부 후퇴'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7월 21일까지 전임자 70명 전원 복귀와 본부·지부 사무실 반납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7월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함.
 - 교육부가 전임자 미복귀시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직권면직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전교조는 "대량해직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함.
 - 이번 전임자 복귀로 인해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참교육 사업 및 혁신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전교조는 "25년간 지켜 온 참교육 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임자 복귀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만들 기로 했다"고 밝힘.
 -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7월 21일까지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를 요청했다"며 "전원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만큼 전원이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교육부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거)을 요구함.

- 교육부는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기관 위임 국가사무인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 및 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임.
- 하지만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청들이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분위 기로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감은 "징계사유와 면직이 적합한지 징계위원회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임을 보였고, 충북도교육감도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적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고 법리"라며 "더구나 전임자임기가 남아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무력화 의도"라고 주장함.

◈ 현대제철, "비정규직 공동파업"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 규직지회(순천공장) 조합원 800여 명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7월 10일 전면파업을 벌였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협력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순환 파업을 진행 중임.
 - 두 지회는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 내협력업체 노사 임단협 체결을 위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회장이 적극 나서야 한 다"고 촉구함.
- 또한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노조탄압 중단을 촉구 하며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 이후 13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순천공 장에서도 최근 1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지는 사고를 당해 현대제 철은 지난달 9일 노동·사회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됨.
 - 현대차와 기아차는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은 3조3교대로 일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지회는 정규 직과 같은 4조3교대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 당진공장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노조가입자들에게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

- 기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잇따르고 지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만 60여 건에 이름.
- 올해 초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냉연부문을 합병한 현대제철이 경량화공장을 인수하지 않아 특정 협력업체 소속 55명의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져 고용불안 논란도 존재함.

◆ 화물연대.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 조속 처리 안하면 총파업'

- 화물연대는 2012년부터 화물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도로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음.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15개 지부 1만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하루 경고파업을 벌임.
 -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도 의왕ICD와 전남 광양 컨테이너부두 국제터미널, 부산 신선대 부두 등 20여 곳에서 파업출정식과 결의대회·가두행진을 벌였음.
 - 또한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운송료와 지입제(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거기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과적・과속・장시간 운전・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번호 판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과속 3진 아웃제・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화물차 도로 통행료 인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함.
 - 화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화물악법으로 이득을 취해 온 대기업과 운송자본들의 로비로 인해 법률안이 번번이 다뤄지지 않거나 보류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무산시킬 경우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 라고 경고함.

◈ 금융노조, 파업준비 본격화

○ 금융노조는 지난달 10일 오후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2014년 산별임단투 승리 투쟁 계획안'을 심의하고 중앙투쟁본부를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쟁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태세에 돌입함.

- 4월 10일 시작된 금융 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은 대대표교섭 네 차례, 대표단교섭 여 섯 차례를 포함해 16차례나 진행되었으나 노사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자, 금융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투쟁본부를 가동하여 파업준 비를 본격화함.
- 쟁점은 임금을 비롯해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복리 후생 축소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음.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고, 60세 정년연장과
 연계한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노조는 지난 8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15일간의 조정기간에 합의에 실패할 경우 8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9월 초 파업에 돌입할 방 침이라고 밝힊.

◈ 유성기업, 노조탄압에 이어 '몰래카메라' 논란

- 유성기업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이어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나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 섰음.
 -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유성기업 사측이 사업장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놓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6월 27일 유성기업 영 동공장 사무실 3곳에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 작은 구멍 속에 설치한 몰래카 메라를 확인했고, 또 다른 사무실 천장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흔적이 발견 됐다고 밝힘.
 - 한 법률 관계자는 "유성기업에서는 회사가 만든 노조 조합원들이 지회 조합원에게 폭력을 통한 충돌을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측은 충돌과정이 담긴 영상을 회사노조에 전달하고, 회사노조는 이를 이용해 지회 조합원을 고소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함.
 - 지회는 몰래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사측을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몰래카메라로 노조활동을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함.

◆ 지방공기업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

- 노동계는 지방공기업 운영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행부 가 획일적 지침으로 지방공기업들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강요한다면 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산하 지방공기업 정상화 특별대책위원 회는 지난 7월 10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한 지방도시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의 60%는 수도권 도시개 발공사들의 부채인 데다 이 또한 정부 정책으로 주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부채의 책임을 지방정부도 아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 다른 지방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지방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해 함께 토론해야 한다"며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채를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 지우겠다는 것인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함.
 -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지방공기업들의 복리후생 수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차라리 공무원 수준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대화 없는 불통정책을 고집한다면 7·30 재보선에서 심판하고, 9월 3일 총파업을통해 반노동자 정권과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함.

◈ 국민권익위원회, 매월 지급한 성과급도 임금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 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림.
 - 퇴직자 박씨 등 50명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 지청에 체당금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음.
 - 박씨의 회사는 부실채권을 판매하는 곳으로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 1천만 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 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불함.
 - 이에 강남지청은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본급 삭감도 임금반납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당금 액수를 박씨 등에게 통지함.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삭감된 기본급은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성과급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히고 "실적에 따라 임금 삭감과 성과급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유효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며 "은혜적 성격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함.

◈ 고용노동부, 넉 달 이상 고의로 임금 안주면 배로 지급

-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 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힘.
 -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 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것이고,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됨.
 -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함.
 -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 로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을 적용함.
 - 이 밖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고,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됨.
-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하면 50%를 감면해 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함.
 - 고용노동부는 판매 단순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 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힘. ★★■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